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06. 12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0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06. 19 (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검토의견

본 조례 폐지조례 건은

- 공영개발부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각 가능한 잡종지 등이 2007년 7월 27일 부로 매각 완료됨에 따라
- 사하구 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는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조례 폐지조례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